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<br>695 |
|----------|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23년 5월 3일  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에 대한 분장사무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, 상위 법령인 동 조례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.
- 따라서 동 조례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에 ‘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‘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규정함(안 제8조제10호 신설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| 수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8조(교육정책국) (생략) | 제8조(교육정책국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| 제8조(교육정책국)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|
| 1. ~ 4. (생략)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| 1. ~ 4.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|
| 5.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| 5. 교육정보화 <u>및 행정 정보화</u> 에 관한 사항 | 5.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|
| 6. ~ 9. (생략)    | 6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| 6. ~ 9.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| <u>10.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|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0호 및 제14호를 삭제하고, 제8조제5호 “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”을 “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”으로 수정한다.

제8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9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

제6절 “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”으로,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의 “학교보건진흥원”을 “보건안전진흥원”으로 수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제9조제10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 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|
| 제7조(기획조정실)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조(기획조정실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9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<u>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·조정</u><br><u>에 관한 사항</u> | 10.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~ 13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. ~ 1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|
| 14. <u>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</u>                   | 14.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8조(교육정책국)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8조(교육정책국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<u>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</u> 에 관한<br>사항       |
| 6. ~ 9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 | 10. <u>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</u><br><u>사항</u> |
| 제9조(교육행정국)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9조(교육행정국)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9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9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 | 10. <u>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</u>                 |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 <u>학교보건진흥원</u>   | 제6절 서울특별시교육청 <u>보건안전진흥원</u>   |
| 제21조(설치) ① 법 제32조에 따라 -<br>----- 서울특별시교육청 <u>학교보건진흥원</u> (이하 “ <u>학교보건진흥원</u> ” 이라 한다)을 둔다. | 제21조(설치) ① 법 제32조에 따라 -<br>----- 서울특별시교육청 <u>보건안전진흥원</u> (이하 “ <u>보건안전진흥원</u> ” 이라 한다)을 둔다. |
| ② <u>학교보건진흥원</u> 은 서울특별시-----.  | ② <u>보건안전진흥원</u> 은 서울특별시-----.  |
| 제22조(원장) <u>학교보건진흥원</u> 에 원장을 두고 -----<br>-----.  | 제22조(원장) <u>보건안전진흥원</u> 에 원장을 두고 -----<br>-----.  |
| 제23조(업무) <u>학교보건진흥원</u>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 | 제23조(업무) <u>보건안전진흥원</u>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 |